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215484 판결 [횡령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송오근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9. 30.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6가단31145 판결

주 문

1.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385,000원 및 그중 68,173,337원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21,181,6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68,173,337원에 대한 2015. 5.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엔진첨가제 판매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8. 8. 1.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이 사건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인천, 부천시, 김포시 등에 있는 거래처에 위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 27. 이 사건 업체에서 퇴사한 후 같은 해 5. 7. 원고에게 자신이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장부를 조사한 후 미수금 부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피고가 16,289,000원을 수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장부와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합계 69,145,783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9. 29. ‘피고는 2008. 10. 30.경부터 2015. 4. 26.경까지 거래처로부터 합계 13,830,000원의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원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11. 17.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약10282),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2017. 9. 29.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08. 7. 28.부터 2015. 4.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업체로부터 598,436,000원 상당의 제품을 출고 받았으나, 피고가 같은 기간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은 합계 455,824,000원이고, 피고가 반환한 장부에 기재된 미수금은 합계 100,773,000원인바, 피고는 위 출고 금액에서 위 입금액 및 미수금을 공제한 41,839,000원(= 598,436,000원 - 455,824,000원 - 100,773,000원)을 거래처로부터 수금하고도 임의로 소비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제품을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가 반환한 장부에 기재된 미수금 100,773,000원 중 20,092,000원은 실제로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이미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완료하였음에도 미수금으로 허위기재한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미수금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장부를 반환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위 20,0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거래처를 1회 방문할 때마다 관리수당으로 1,000원을 지급하고, 거래처 방문에 소요되는 유류비로 10km당 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6,448회에 걸쳐 폐업 내지 거래가 종료된 거래처에도 계속하여 방문한 것처럼 보고하고, 방문횟수를 13,331회나 부풀려 보고함으로써 19,779,000원[= 1,000원 × (6,448회 + 13,331회)] 상당의 관리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류비로 수령한 35,982,286원 중 7,675,000원¹⁾은 위와 같은 허위 방문 보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89,385,000원(= ① 주장 관련 41,839,000원 + ② 주장 관련 20,092,000원 + ③ 주장 관련 27,454,000원²⁾)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13,830,000원의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원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가 출고 받은 물품 수량과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 및 피고가 반납한 장부에 기재된 미수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그 금액 전부를 피고가 임의로 소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13,8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난 점, ③ 피고가 작성한 거래처 관리카드, 영업일지 등 장부는 실제 거래내역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13,830,000원을 초과하여 물품대금 등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내지 11, 25, 26, 28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거래처 사업자들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인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면하고자 미수금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반환한 장부의 작성 및 보고 시점과 원고가 거래처에 그 내역을 일일이 확인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③ 거래처 관리카드의 경우 피고가 입사하기 이전의 거래내역도 기재되어 있고, 2008년, 2009년에 작성된 내역에는 다른 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전임자로부터 거래처를 넘겨받으면서 함께 인수·인계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전임자로부터 거래처를 넘겨받으면서 각 거래처에 남아있던 재고와 미수금 내역이 정확하게 정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작성한 거래처

관리카드, 영업일지 등 장부는 실제 거래내역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장부의 미수금 내역에 일부 허위 기재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92,000원을 미수금으로 기재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②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7 내지 19, 23 내지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거래처 사업자의 변경이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거래처 관계자 진술이나 폐업 사실 확인만으로 피고가 특정 시점에 해당 거래처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영업직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직원들이 방문한 거래처에는 전화상담직원이 실제 방문 여부를 확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거래처를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관리수당 19,779,000원 및 유류비 7,675,000원을 청구, 수령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③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박창우, 판사 김한철

1) 2019.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3면의 ‘7,675,008’원은 청구취지 금액이나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7,675,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 관리수당 19,779,000원 + 유류비 7,675,000원